## 고려의《10훈요》의 법적성격

김 명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에 이르는 모든 착취사회의 법은 착취계급을 위하여 복무하였으며 착취계급은 그것을 통치수단으로 하여 국가적지배를 유지하여왔습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40폐지)

고려의 《10훈요》의 법적성격에 대한 리해를 바로하는것은 삼국통일후 고려법의 계급 적성격을 파악하는데서 주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936년에 삼국이 통합된 이후 고려봉건지배계급은 그에 맞게 국가적지배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통치수단으로서 법을 제정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이 시기 봉건법제정에서 주목되는것은 법을 만들어내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규제한 《10훈요》가 발포된것이였다.

《10훈요》는 고려의 시조군주인 왕건이 943년에 림종을 앞두고 발포한 10가지 항목으로 된 규정이였다.

《10훈요》의 법적성격은 한마디로 말하여 그것이 국가통치제도와 관련한 원칙들을 규제 한 법이라는것이다.

일반적으로 봉건전제군주제국가에서 군주의 《조서》나 《제서》 등은 군주가 직접 작성 하였으며 그것은 해당 분야의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였다.

《10훈요》는 고려국가의 군주인 왕건이 직접 쓴것이였다.

군주가 작성하였다면 그 어떤 군주의 궁중생활문제와 관련한 이러저러한 내용인것이 아니라 군주가 대단히 중시하는 문제라는것을 의미한다. 군주가 중시한다는것은 앞으로 이 내용대로 하여야 한다는 법적성격이 담겨져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결국《10훈요》는 고려가 3국을 통일한 다음 제정한 가장 중요한 법이였다.

《훈요》란 중요한것을 훈시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이란 앞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의미하였으며 때문에 《훈요》는 고려국가가 앞으로 반드시 국가통치에서 지켜야 할것이였다.

고려국가가 앞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것이란 고려국가가 법으로 내세우고 국가의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이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10훈요》의 법적성격을 그대로 표현해주는것이다.

국가통치는 다름아닌 법제정과 그 실시를 전제로 한다. 이것은 《10훈요》가 고려법제정의 기초로 된다는것을 말한다. 때문에 《10훈요》를 고려법가운데서 법제정의 기초, 법제정의 원칙을 규제한 법이라고 하는것이다.

《10훈요》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국가통치제도와 관련한 원칙들에서 군주의 지위계승에 대하여 규제한것이다.

《10훈요》에는 군주의 지위는 반드시 왕족의 직계에 의하여 계승되여야 한다는것을 규

정하고있었다.

《10훈요》에서 《적자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는것이 떳떳한 법》이라고 한것은 왕위는 반 드시 왕과 왕비사이에 난 자식에게 계승하는것이 기본적인 법도라는것을 의미하였다.

신분관계가 사회관계의 기초로 되고있던 봉건사회에서 군주가 난 자식은 그 어머니의 신분이 어떤가에 따라 적자와 서자로 갈라지였다.

적자는 바로 군주의 정실인 왕비가 난 자식이며 서자는 후실인 후궁이 난 자식을 가리키였다. 바로 정실에게서 난 자식을 군주의 뒤를 이을자로 정해놓고있다가 군주가 죽거나 더는 군주의 지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였을 때에 그에게 군주의 자리를 넘겨주었다.

고려에 앞서 존재한 고구려에서는 군주의 뒤를 이을자를 태자라고 불렀으며 군주가 죽으면 태자가 곧 군주가 되여 아버지의 뒤를 이었다.

고려는 고구려의 이러한 군주지위계승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 미리 군주의 지위를 계승할자를 정해놓고있었으며 그 대상으로는 군주의 적자가 기본으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간혹 군주의 적자가 군주의 지위를 계승할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군주에게 정실이 낳은 자식이 없고 다만 후실이 낳은 자식이 있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때문에 《10훈요》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군주의 지위를 계승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을 규정하였다.

《10훈요》에서 《후세에 만일 국왕의 맏아들이 착하지 못하거든 왕위를 지차 아들에게 줄 것이며 지차 아들이 또 착하지 못하거든 그 형제중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는자로 써 정통을 잇게 할것이다.》라고 한것은 바로 이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국왕의 아들이 착하지 못하다고 한것은 군주의 지위를 이을만 한 능력이 없는것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생에게 군주의 지위를 넘겨주어야 하며 또 그마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형제중에서 계승자를 선택하여야 한다는것이다.

《10훈요》의 이 규정은 고려봉건국가에서 군주의 지위는 반드시 군주직계족속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규제한것이였다.

군주의 지위는 국가의 최고통치자의 지위이며 이것은 봉건국가제도상에서 가장 주되는 문제이다.

고려봉건국가의 시조군주인 왕건은 《10훈요》를 공포하면서 그 조항에서 군주의 지위계승문제를 중요하게 강조하였던것이다.

군주의 지위계승문제와 관련한 《10훈요》의 규정은 고려봉건국가가 앞으로 가족법제정에서 가장의 지위상속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겠는가 하는것을 강조한것이라고도 볼수 있다.

군주의 지위계승문제에 대한 《10훈요》의 이 규정에 따라 가족법상에서도 가장의 지위는 장자가 계승하는것이 일반적인 규례로 되여있지만 그가 가장의 지위를 이을만 한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형제중에서 선발되게 되여있었다.

고려봉건국가에서 상속제도를 보면 장자상속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그것이 필수적인 성격을 띠고있지 않았으며 맏아들이 상속능력이 없으면 그 형제중에서 상속자로 나서게 되여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10훈요》가 고려법제정에서 기초로 되였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10훈요》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국가통치제도와 관련한 원칙들에서 국가가 불교를 장려하고 적극 내세워야 한다는데 대하여 규제한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0훈요》에서는 고려의 군주가 반드시 불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규제하였으며 절간과 사원들을 짓는것을 무질서하게 짓지 말고 도선의 제의에 따라 맞춤한 곳에 세우며 연등회와 팔관회를 진행할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10훈요》의 이러한 규정은 고려에서 불교를 국교로 삼고 군주들이 국가통치에서 불교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는것을 규정한것이였다.

고려가 불교를 국교로 정한다는데 대하여 《10훈요》에서 강조한것은 고려가 국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것을 그대로 실증해주는것이다.

고구려는 세나라중에서 제일먼저 불교를 받아들이였으며 그것을 국교로 선포하였다. 이 와 달리 백제나 신라는 불교를 후에 받아들이였다.

더우기 신라인 경우만 보더라도 불교를 받아들인것은 고구려보다 150여년후인 528년 이였다. 신라에서는 불교를 처음 들여올 때에 불교를 장려하면서 사원과 절간들을 많이 지었지만 유교를 내세우면서부터는 불교보다도 유교를 적극 장려하였다. 그것은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여 장려하면서도 국가의 관리들을 양성하는데서는 유교경전을 완전히 통달하는 것을 적극 내세운데서 표현되였다.

고려봉건국가는 이 《10훈요》발포이후 불교와 관련한 일체 모든 제도들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사원과 그에 토지를 할당할데 대한 규정들, 중들이 지켜야 할 규정들, 절간 과 개별적인 평민들사이의 관계, 절간과 국가관청과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들이 속한다.

바로 《10훈요》의 규정이 이후 고려봉건국가의 불교관련법들의 기초로 되였던것이다.

《10훈요》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국가통치제도와 관련한 원칙들에서 군주가 《어진 통치》를 하고 상과 벌을 적절히 배합하여야 하며 관리들에 대한 록봉제도를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규제한것이다.

《10훈요》에서는 《임금이 인민의 신망을 얻는것이 가장 어려운것이다. 그 신망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간하는 말을 좇고 참소하는자를 멀리하여야 하는바 간하는 말을 좇으면 현명하게 된다. 참소하는 말은 꿀처럼 달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참소가 자연 없어질것이다. 또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되 적당한 시기를 가리고 부역을 경하게 하며 조세를 적게 하는 동시에 농사짓는것이 어려운 일이라는것을 알게 되면 자연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편안하게 될것이다. 상과 벌이 적절하면 음양이 맞아 기후까지 순조로워지니 그것을 명념하라.》라고 하였다.

봉건군주들은 광범한 근로대중에 대하여 《어진 정치》를 한다고 표방하여왔으며 저들의 반인민적통치의 성격을 가리우고 인민들에게 저들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만적인 정치적, 법적조치들을 실시하였다.

인민들을 봉건적지배와 착취에 순응시키려면 그들이 봉건군주에 대한 절대적인 환상을 가지게 하며 봉건국가가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들도 《백성을 위한것》처럼 하여야 하였다.

《10훈요》에서 규정한 내용은 바로 그런 의도에서 규정된것이였다.

고려봉건국가의 《소원》제도라든가 《자모상모법》 등 조세관계법들의 내용들은 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제정된것들이였다.

《10훈요》에서는 관리들에 대한 록봉제도를 정확히 실행하는것을 국가관리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규제하였다.

고려가 삼국통일을 이룩한 시기를 보면 후백제나 신라, 기타 할거세력들이 차지하고있

던 지역들에서 많은 평민들이 노비로 전락되었으며 그것으로 하여 국가의 재정문제가 심 각하게 제기되였다. 평민들로부터 조세를 걷어들이고 그것으로 봉건관리들에게 록봉을 주 어야 하나 평민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봉건국가의 논밭에 대한 리용문제가 제기되고 그로 부터 국고에 납부되는 조세가 적었다. 때문에 록봉문제는 고려봉건국가의 관리운영을 위한 국가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고려가 성립된 918년 8월에 왕건이 노비《방량》조서를 내린것은 바로 그에 대한 실례로 된다. 특히 956년에 《노비안검법》이 제정되여 압량위천된 사람들을 량인으로 신분을 회복시킨것은 이 《훈요》의 규정에 따라 록봉의 원천을 원만히 확보하기 위하여 진행한 사업과 직접 련결되여있는것이였다.

이와 함께 봉건관리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록봉제도와 노비제도수립과 관련한 법들이 제정되게 되였다.

《10훈요》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국가통치제도와 관련한 원칙들에서 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규제한것이다.

《10훈요》에서는 나라의 주변에 강하고도 악한 나라가 린방으로 되여있으므로 평화시기에도 위험을 잊어서는 안된다는것과 병졸들을 보호하고 돌보아주어야 하며 부역을 면제하고 매년 가을에 무예에 뛰여난자들을 검열하여 적당한 벼슬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항목에서 지적한 주변의 나라란 당나라와 거란을 의미하였다.

바로 이러한 나라들이 호시탐탐 고려를 침략하기 위해 노리고있는것만큼 언제나 군사들을 잘 준비시키고 그들의 생활도 안정시키며 해마다 무술검열을 진행하여 당선된자들을 벼슬에 등용하여야 한다고 한것이였다.

《10훈요》의 규정에는 고려가 고구려의 무술중시의 등용제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통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고려의 목적이 반영되여있다.

고구려는 해마다 3월 3일이면 전국적판도에서 무술경기대회를 진행하였으며 여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관리로 등용하였다. 이러한 법적조치는 고구려가 대강국의 위 용을 떨치게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10훈요》의 이 규정에 따라 고려에서는 군사를 강화하기 위한 토지제도, 록봉제도, 관리등용제도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법들이 제정되게 되였다.

고려가 삼국을 통일한 후 사대주의적풍조를 없애는것은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에게 있어서 더우기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10훈요》에서는 다른 나라의 풍속과 언어를 구태여 억지로 받아들이지 말데 대하여서 와 일정한 지역의 사람들을 국가통치에 인입시키지 말데 대하여 등 국가통치와 관련한 원 칙들을 규제하였다.

이와 같이 《10훈요》는 고려봉건국가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각 분야의 제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법들을 제정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을 규제하고있었다.

우리는 고려의 《10훈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착취자국가법의 반동성을 똑똑히 알고 철저히 폭로비판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법률적으로 옹호고수해 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